

일산 I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고양시 고시 제2015-104호(2015. 4. 10.)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되고, 고양시 고시 제2017-133호(2017. 4. 14.)로 정비계획(변경) 수립된 일산서구 일산동 960-16번지 일원의 일산 I -2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수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2일

고 양 시 장

- 1. 정비사업의 명칭 : 일산 I -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변경없음
 - 정비구역 결정 조서

지정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주택재개발사업	일산 I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일산동 960-16번지 일원	17,738	-

- 3. 정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7,738	-	17,738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7,738	-	17,738	100.0	-

2)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7,738.0	-	17,738.0	100.0	-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4,034.0	감) 30.6	4,003.4	22.6	-
	도 로	1,511.0	증) 121.4	1,632.4	9.2	-
	보행자도로	203.0	증) 1.0	204.0	1.2	-
	문화공원	2,320.0	감) 153.0	2,167.0	12.2	-
획 지	소 계	13,704.0	증) 30.6	13,734.6	77.4	-
	획지1(공동주택)	13,704.0	감) 1,341.8	12,362.2	69.7	-
	획지2(종교시설)	-	증) 1,372.4	1,372.4	7.7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1	25~35	보조간선 도로	1,893	대로1-10 대화동3-10	대로1-3 중산동1678	일반도로	-	경고제147호 74-05-16	-
변경	대로	3	11	25~35 (28~35)	보조간선 도로	1,893	대로1-10 대화동3-10	대로1-3 중산동1678	일반도로	-	경고제147호 74-05-16	일부구간 확폭 및 선형조정
기정	소로	1	152	10~17	국지도로	1,310	대3-11 일산동973-83	대1-4 일산동1653	일반도로	-	경고제359호 88-12-03	-
변경	소로	1	152	9~16	국지도로	1,310	대3-11 일산동973-83	대1-4 일산동1653	일반도로	-	경고제359호 88-12-03	선형조정
기정	소로	3	493	4	특수도로	48	대3-11 일산동958-4	소로1-152 일산동1030	보행자 전용도로	-	고고제 2015-104호 15-04-10	-
변경	소로	3	493	4	특수도로	48.5	대3-11 일산동958-4	소로 1-152 일산동1030	보행자 전용도로	-	고고제 2015-104호 15-04-10	선형조정 에 따른 연장변경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11	대로 3-11	- 일부구간 확폭 및 도로선형조정 - 구역 내 도로폭원 B = 25~35m(28~35m)	대상지 서측 문화공원 인근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일부 구간 확폭 및 교통처리계획을 반영한 도로 선형조정
소로 1-152	소로 1-152	도로선형조정에 따른 도로폭원 변경 B = 10~17m → 9~16m	교통처리계획을 반영한 도로 선형조정
소로 3-493	소로 3-493	도로선형조정에 따른 도로연장 변경 L = 48m → 48.5m	교통처리계획을 반영한 도로 선형조정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57	문화공원	공원	일산 서구 일산동 972-12	2,320.0	감) 153	2,167.0	고고제2015-104호 15-04-10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57	문화공원	- 면적 변경 - 면적 : 2,320.0㎡ → 2,167.0㎡ 감) 153㎡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대상지 서측 도로 확폭에 따른 공원면적 변경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

구 분		기 준	계 획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2,225.58㎡	2,270.53㎡	변경
근린생활시설		▪ 면적기준없음	990㎡	339.34㎡	변경
관리사무소		▪ 50세대 이상의 경우, 10+(세대수-50)×0.05㎡ 이상 확보, 그 면적이 100㎡를 초과할 경우, 100㎡로 설치가능	45㎡	129.42㎡	변경
주 민 공 동 시 설	소계	▪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경우 - 세대당 2.5㎡를 더한 면적	1,190.58㎡	1,801.77㎡	변경
	경로당	▪ 150세대 이상의 경우, 면적기준 없음	80㎡	97.32㎡	변경
	어린이집	▪ 300세대 이상의 경우, 21인 이상의 규모를 갖춘 보육시설 설치 - 「영유아보호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00㎡	259㎡	변경
	작은 도서관	▪ 300세대 이상의 경우, 33㎡이상, 6석이상, 1,000권이상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및 제2호가목 3)의 기준에 적합	80㎡	-	변경
	주민운동 시설	▪ 500세대 이상의 경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330.58㎡	759.15㎡	변경
	어린이 놀이터	▪ 150세대 이상의 경우, 면적기준 없음	600㎡	600㎡	변경 없음
	주민공동시설 (주민회의실)	-	-	56.69㎡	변경
	용역원 휴게실	-	-	29.61㎡	변경

5)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 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	일산동 960-16 번지 일원	허용용도	· 주택법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40% 이하 (33.46%)	-
		용 적 률	· 229.96% 이하 (230%)	-
		높 이	· 최고층수 : 25층	-
		배 치	· 공동주택 주동의 길이는 4호 연립규모이하 내지 50m 이하로 배치(임대건축물제외)	-
		형 태	·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저층부·중층부·고층부로 변화 있는 입면 계획을 권장하여 특색 있는 단지조성 ·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가 가능토록 건축물 배치	-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기초색, 보조색, 강조색의 3가지 색으로 분류 · 주조색은 전체면적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보조색은 전체면적의 25% 미만으로 하여야 함 · 동번호, 벽면로고 등은 강조색을 사용 · 색상별로 사용할 수 있는 색은 건축부위별 색채 가이드라인을 준수	-
		건축선	· 건축한계선 2m, 일부구간 6m 지정	-

• 변경

◦ 1BL - ① : 공동주택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1BL	일산동 960-16 번지 일원	허용용도	· 주택법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40% 이하	—
		용 적 륜	· 230% 이하	—
		높 이	· 최고층수 : 25층	—
		배 치	· 공동주택 주동의 길이는 4호 연립규모이하 내지 50m 이하로 배치(임대건축물제외)	—
		형 태	·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저층부중층부고층부로 변화 있는 입면계획을 권장하여 특색 있는 단지조성 ·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가 가능토록 건축물 배치	—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기초색, 보조색, 강조색의 3가지 색으로 분류 · 주조색은 전체면적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보조색은 전체면적의 25% 미만으로 하여야 함 · 동번호, 벽면로고 등은 강조색을 사용 · 색상별로 사용할 수 있는 색은 건축부위별 색채 가이드라인을 준수	—
		건축선	· 건축한계선 3m, 일부구간 6m 지정	—

◦ 2BL - ① : 종교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2BL	일산동 960-16 번지 일원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나목 종교집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60% 이하	—
		용 적 륜	· 230% 이하	—
		높 이	—	—
		배 치	—	—
		형 태	—	—
		색 채	—	—
		건축선	—	—

6) 환경보전 및 재난 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환경보전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요 약)
우수유출	· 투수가 가능한 포장재료를 이용하여 시공토록 하여 우수유출량 저하 계획
비오톱 변화	· 계획대상지의 비오톱 유형은 주거지 비오톱이며, 사업시행후 현재의 비오톱 유형 및 보전 가치의 변동이 최소화 하도록 대책 마련
기존수목 활용계획	· 추후 재개발 정비사업시 보존가치가 높은 수목 및 수종은 기존 수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

• 재난방지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요 약)	비고
화재	· 지구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수립	-
수해	·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지구주변지역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하며, 지구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교통	· 재해시 소방도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 단지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고발생시 교통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사업 시행시	◦대기질, 소음 및 진동대책 · 사업지구 공사가 진행될 경우 건설장비의 투입과 토공사의 진행으로 비산먼지와 이산화질소가 주로 발생됨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공사장 및 진입도로의 주기적인 살수, 차량속도 제한, 차량덮개 착용,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가설방진망 설치 등으로 공사시 저감대책수립 · 소음 및 진동은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공사차량 속도제한, 사업지구주변 경계부에 가설방음판넬 설치, 소음 및 진동 발생공사는 가급적 방과후 및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주변 학교의 학습에 영향을 최소화함	-
	◦보행안전대책 · 사업지구 외곽으로 공사중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외부 차단함으로써 보행의 영향은 없으나, 학생 및 주민 등 보행안전에 위하여 낙하물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대책 수립후 사업 시행토록 함 · 등하교시간 주가로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차량의 침두시 운행을 제한 (07:00~09:00, 17:00~19:00) · 사업지 주변 확폭하여 설치되는 보도는 우선 확보토록 함 · 공사구간 위험지역 통과시 안전한 차량유도 및 통행로 지정으로 도로상에서 야기되는 사고 위험에 대하여 사전예방 시설물을 설치토록 함 · 공사장비 및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보행 안전 도모	-
사업 완료시	· 사업지구 내 도로변에 가로수와 공원 및 녹지 등에 대기오염물질 정화수종을 선정·식재하여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저감토록 함 · 사업지 및 학교주변 도로에 규격화된 표지판(주의, 규제, 지시) 등과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학생 보행안전을 확보토록 함	-

8) 세입자 주거대책 : 변경

○ 기정

● 임대주택의 공급

- 사업대상지의 임대주택 공급을 통하여 정비구역 내의 세입자 및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도모
-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및 확보비율은 「202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관련규정에서 제시한 규정을 준수
 - 총 건설세대수의 15%(단,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로 건설)

● 이주대책비의 지원

- 「202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이주대책비 지원 기준에 따름
-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계조사통계상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

○ 변경

● 임대주택의 공급

- 사업대상지의 임대주택 공급을 통하여 정비구역 내의 세입자 및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도모
-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및 확보비율은 고양시 고시 제2022-45호에서 제시한 규정을 준수
 - 총 건설세대수의 12%(단,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로 건설)

● 이주대책비의 지원

- 「203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이주대책비 지원 기준에 따름
-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계조사통계상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변경

구 분	계 획	비 고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후 4년 이내	-

10)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 기 정

구 분	계 획	비 고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

• 변 경

구 분	계 획	비 고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

1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역구분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구역명	면적(㎡)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일산 I -2주택 재개발구역	17,738	22	-	-	22	-	-

1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비 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동일	-

1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

• 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	1BL-①	13,704	일산서구 일산동 960-16번지 일원	13,70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	1BL-①	13,734.6	일산서구 일산동 960-16번지 일원	12,362.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BL-①		일산서구 일산동 958-7번지 일원	1,372.4	종교시설

14)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

• 기정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전체계획 세대수	임대주택 계획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 고
정비구역 내	-	-	390세대	59세대(15.13%)	40㎡이하	-

• 변경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전체계획 세대수	임대주택 계획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 고
정비구역 내	-	-	308세대	38세대 (12.34%)	20세대 (6.49%)	40㎡이하	-
					18세대 (5.84%)	50㎡이하	-

※ 고양시 고시 제2022-45호에 따라 12% 이상 확보

15)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 변경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화 재	· 지구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 계획수립 · 본 건물은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특정장소로서 건물의 특성상 재난 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 우려가 크며, 이에 대비한 피난 설비의 배치, 소화 설비와 구조 설비 등 방재에 관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종합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을 보호토록 함 · 소화방재 계획 - 화재 시 연기의 확산 및 유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연설비 설치 - R형 방재 시스템을 이용한 초기화재 감지 및 소화대책을 수립 - 피난 계단을 이용한 안전지대로의 피난이 용이하도록 피난 시스템 구축 - 종합 방재 시스템을 이용한 초기 화재 방지 및 소화대책 수립 - 화재 시 자동식 소화설비의 즉각적인 가동을 위한 운영대책 수립	-
수 해	·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지구주변지역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 한으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 계획 수립 · 공사중 발생하는 토사 유출량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배수구역별로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유출 수 중 토사를 침전시킨 후 상등수만 방류토록 계획 · 절토 및 성토면의 활동과 사면안정에 대한 사면처리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절성토 사면 에 적정구배를 적용하여 사면의 유실 및 붕괴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 · 강우시 공사중에 발생하는 토사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지작업시 절성토 사면의 안정을 기하고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비닐 등의 덮개를 설치하고 사면 상하부에 측구 등 배수 시설을 설치 · 사업시 시행은 우기를 피하여 절성토 작업을 시행	-

1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계획 : 변경

● 일산 I-2구역 주택수급 계획

- 대상지 현황 세대수는 94세대며, 금회 정비사업으로 계획된 세대수는 308세대로써 214세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구 분	현 황	계 획		증가되는 인구 및 세대수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세대수(호)	94	390	308	증) 296	증) 214
인구수(인)	266	1,038	739	증) 772	증) 473

※ 「2035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상 가구당 2.4인

※ 현황 세대수 및 인구는 2012.1 기준 일산1동주민센터로부터 회신된 인구현황임

※ 본 계획세대수는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추후 사업시행인가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임

17)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비 고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공동주택 및 문화공원에 설치하고 항상 모니터링 함	-

18)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 변경

구 역	가 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시설구분	진입로	비 고
	명칭	면적(㎡)				
일산 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획지2	1,372.4	일산서구 일산동 958-7번지 일원	종교시설	대로3-11호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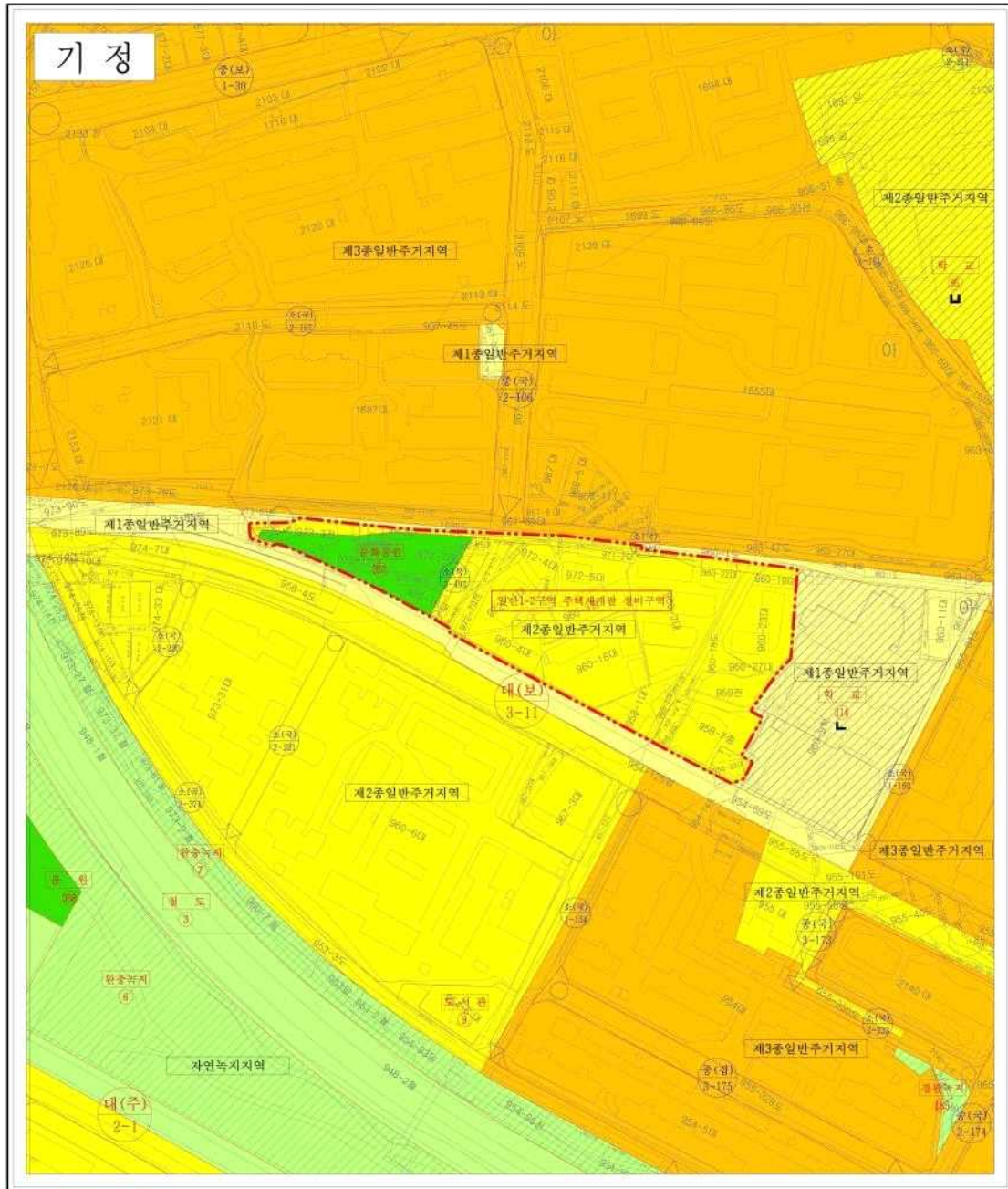
19)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 100% ◦ 추정비례율 : 100.09% = (173,146,995천원 - 133,940,975천원) / 39,169,664천원 × 100 = 100.09% - 총수입 추정 : 173,146,995천원 - 총지출 추정 : 133,940,975천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 39,169,664천원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개별 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개별 공시가격 확인 ◦ 토지 및 건물 소유자 = 토지가액 + 건물가액 - 토지 = 2023년 개별공시지가 × 토지면적 × 보정률(1.19~1.76) - 건물 = 개략단가(약 155만원/3.3㎡) × 연면적 ※ 건물의 개략단가는 구조별 · 용도별 적용지수 적용하여 추정 ◦ 구분건물 = 기준 호 전유면적 단가 × 요인 비교치 × 전유면적 ※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에 토지추정액이 포함되어 있음.																
추정 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권리자분양가 추정액</th><th>추정권리가액</th><th>추정 분담</th></tr> </thead> <tbody> <tr> <td>전용 59A형</td><td>4.58억</td><td rowspan="4">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100.09%)</td><td rowspan="4">권리자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td></tr> <tr> <td>전용 59B형</td><td>4.84억</td></tr> <tr> <td>전용 84A형</td><td>6.06억</td></tr> <tr> <td>전용 84B형</td><td>6.03억</td></tr> </tbody> </table>			권리자분양가 추정액		추정권리가액	추정 분담	전용 59A형	4.58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100.09%)	권리자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전용 59B형	4.84억	전용 84A형	6.06억	전용 84B형	6.03억
권리자분양가 추정액		추정권리가액	추정 분담														
전용 59A형	4.58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100.09%)	권리자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전용 59B형	4.84억																
전용 84A형	6.06억																
전용 84B형	6.03억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부동산 정책변화, 부동산 시장 변화,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형도면고시(기정)도

고양시 일산 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지형도면고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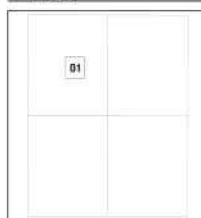


* 변경 및 신설부분에 한하여 유효함

범례

경계	경계	경계	경계	경계	경계
도로	도로	도로	도로	도로	도로
하천	하천	하천	하천	하천	하천
철도	철도	철도	철도	철도	철도
공원	공원	공원	공원	공원	공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종교	종교	종교	종교	종교	종교
문화	문화	문화	문화	문화	문화
체육	체육	체육	체육	체육	체육
의료	의료	의료	의료	의료	의료
주거	주거	주거	주거	주거	주거
상업	상업	상업	상업	상업	상업
공업	공업	공업	공업	공업	공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수역	수역	수역	수역	수역	수역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색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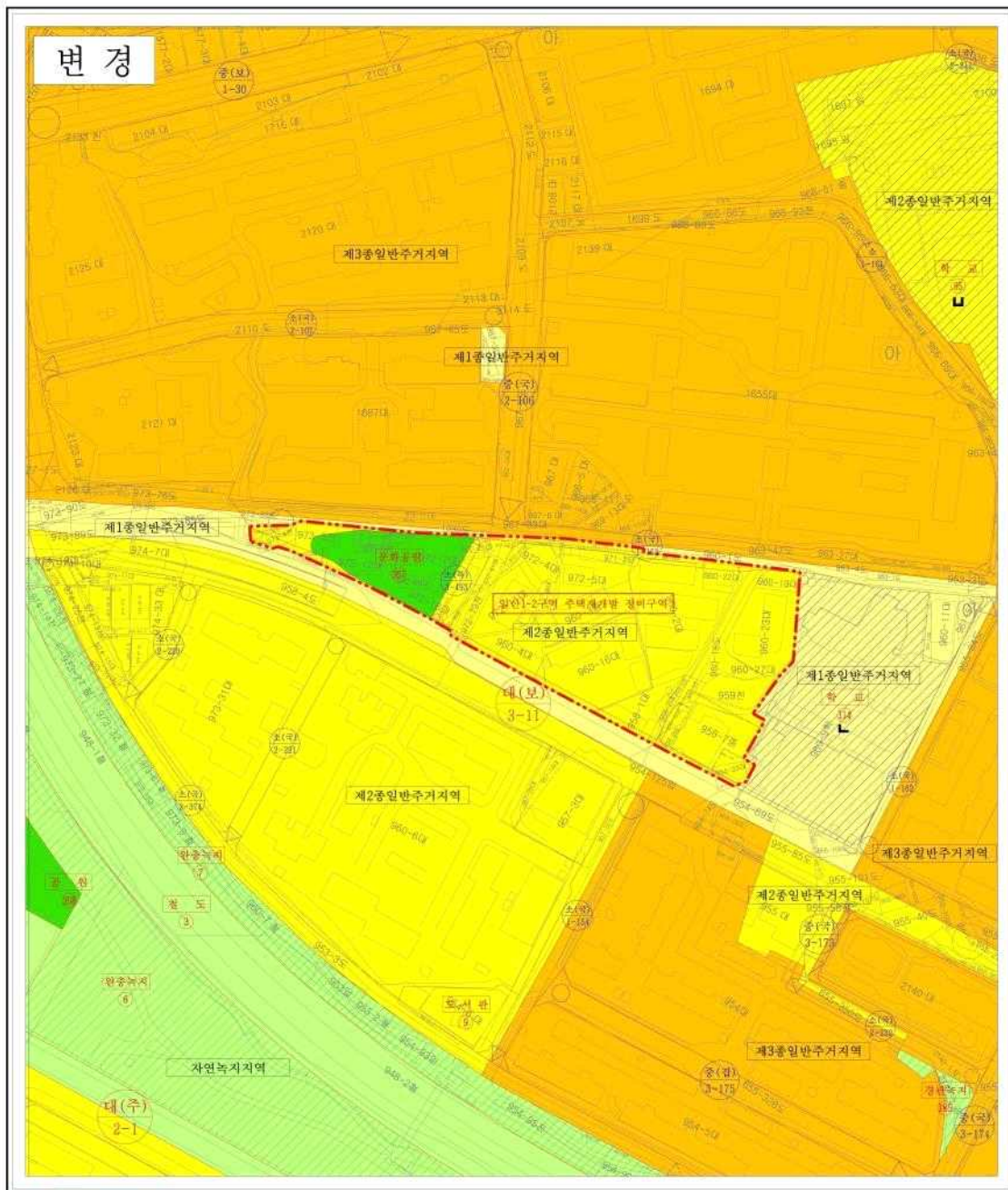


Scale = 1:1,00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m

■ 지형도면고시(변경)도

고양시 일산 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지형도면고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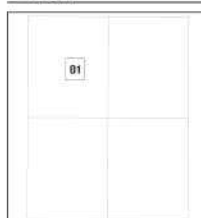


* 변경 및 신설부분에 한하여 음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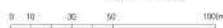
범례

[illegible]

색인도



Scale = 1:1,000



구분	합 입 전 자		합 입 장 자		
	자살장	1차 학업장	2차 학업장	1차 학업장	2차 학업장
소 계	19(100%)	15(100%)	2(100%)	2(100%)	2(100%)
성 별	남자 11 여자 8	남자 10 여자 5	남자 2 여자 0	남자 2 여자 0	남자 2 여자 0
학 령	-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7학년 초등학교 8학년
성 명	김민서 이재민	이재민 김민서	김민서 이재민	이재민 김민서	김민서 이재민
학업진					